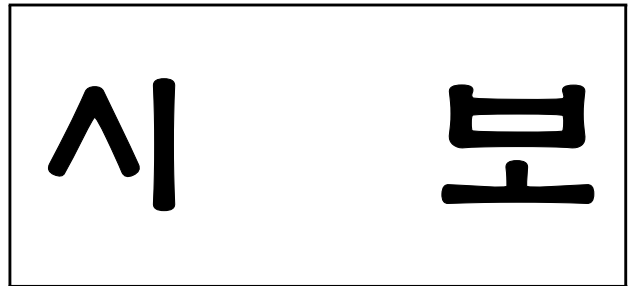


파 주 시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818호
2010년 1월 26일(화)

차 례

고 시

- 파주시고시 제2010-18호 임진강 야영 및 취사행위 금지지역 지정 고시 1

공 고

- 파주시공고 제2010-179호 파주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위탁운영법인 모집 공고 2
- 파주시공고 제2010-185호 불법 주·정차단속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6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: 파 주 시

임진강 야영 및 취사행위 금지지역 지정 고시

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(전진교)에서 적성면 어유지리(연천경계)까지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야영 및 취사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 고시합니다.

2010년 1월 26일

파 주 시 장

1. 금지지역 지정 구간

하 천 명	등 급	구 간		연 장
		시 점	종 점	
임 진 강	국가하천	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(전진교)	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(연천군 경계)	25.0km

2. 주요내용

가. 야영 및 취사행위 금지기간 및 행위제한

(1) 금지기간 : 연중 일정시간

※ 하절기(5월~ 9월) : 18:00 ~ 06:00, 동절기(10월~4월) : 17:00~07:00

(2) 행위제한 : 야영 및 취사행위

나. 제한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분

(1) 근 거 : 「하천법」 제46조를 위반하여 하천 안에서 금지행위를 한 자

(2) 과태료 : 「하천법」 제98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

파주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위탁운영법인 모집 공고

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2, 「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」 조례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파주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수탁운영자(법인)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10년 1 월 26 일

파 주 시 장

1. 위탁 시설현황

- 시 설 명 : 무한돌봄네트워크팀
- 위탁권역

(2009.12.31현재)

권역별	관 할 지 역	인구현황	저소득층
북부권역	문산읍, 법원읍, 파주읍, 광탄면, 적성면, 파평면, 군내면	90,401명	10,669가구, 14,709명
남부권역	교하읍, 조리읍, 탄현면, 월롱면, 금촌2동, 금촌1동	232,610명	13,790가구, 19,643명

2. 위탁방법 : 권역별로 구분하여 위탁

※ 신청법인은 권역별로 구분 신청하여야 함

3. 위탁사업내용

- 위탁사업내용
 - 지역 사례 발굴, 접수 및 관리
 - 통합사례회의(네트워크팀, 협력기관 공동) 운영
 - 센터 솔루션위원회 참여
 -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
 - 그 밖에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등

4. 위탁기간 : 2010. 3. 1 ~ 2012. 2. 29(2년간)

5. 자격요건 및 운영조건

-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거나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

- 보조금 지원 이외에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에 필요한 인력, 운영비등 재원확보가 가능하며, 위탁 신청 시 일정 규모의 재정부담을 제안할 수 있는 법인
- 위탁운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관 운영지침, 위·수탁협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

6. 공고 및 접수기간

- 모집공고기간 : 2010. 1. 26 ~ 2. 4 (10일간)
- 접수기간 : 2010. 1. 29 ~ 2. 4 (공고일 포함 7일간)
- 접수장소 : 파주시청 주민생활과
- 접수방법 : 직접 방문접수(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)
※ 근무시간(09:00~18:00) 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구비서류 미비 시 추가접수 불가

7. 수탁운영자 결정방법 및 통지

- 파주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수탁운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
- 신청인은 심사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법인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, 불참할 때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
(심사일 별도 통보)
※ 신청 접수순으로 사업계획 설명 15분,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하되 심사위원회의 합의로 조정할 수 있음
(발표자는 팀장 내정자가 하며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)
- 1개 법인 단독 신청시에도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평균 점수 70점미만시 재위탁 공고
- 심사결정 후 위탁결정자에 개별통지

8. 제출서류

- 위탁운영신청서 1부
- 각서 1부 [서식 1]
- 법인현황 1부 [서식 2]
 -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(공고일전 1개월 이내 소인) 각 1부
 - 법인정관 및 인·허가증 사본,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
 - 최근 3년간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적 및 기타 증빙서류
- 법인의 재산조서 1부 [서식 3]
 - 법인의 2008년도 결산서 및 기타 증빙서류
- 법인 자부담 계획 1부 [서식 4]
 -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세입·세출 예산서 1부 [서식 4-1]
 - 법인부담금 납입확약서 1부 [서식 4-2]
(수탁운영에 따른 법인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포함)

- 사업운영계획서 1부 [서식 5]
- 기타 증빙서류
 - 팀장 자격 증빙서류
(이력서, 자기소개서, 경력증명서, 최종학교 졸업증명서, 자격증 사본 등)
 - 법인대표 이력서
 - 기타 수탁 운영에 필요한 자료
 - ▷ 상기 서류는 A4 용지 1권으로 편철하여 15권 제출

9. 신청 시 유의사항

-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으로 판명 시 선정 후에도 수탁이 취소될 수 있으며, 제출 서류의 오류 및 누락상태로 접수 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며, 이에 대한 귀책사유는 수탁신청 법인에 있음
- 선정된 법인은 파주시가 지정한 기일까지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시는 위탁법인 결정을 무효로 하며, 이 경우 심의 결과 차순위의 법인과 별도 계약할 수 있음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주민생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[☎ 031)940-4551]

【남부, 북부】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위탁 운영 신청서(안)

법 인 명		법 인 설립일자	
소 재 지 주 소		전화번호	
대 표 자 성 명		주민등록 번 호	
설립목적			
법 인 의 주요사업	※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		
법 인 의 자산사항	총계 백만원 (부동산 백만원, 동산 백만원)		
부 채	백만원		
파주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,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【남부, 북부】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을 위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. 2010. . . 신청인(법인대표) : (인)			
파 주 시 장 귀 하			
첨부 1. 각서 (소정양식) 2. 법인현황 (소정양식) - 법인 등기부 등본, 법인 인감증명서(공고일전 1개월 이내 소인) 각1부 - 법인정관 및 인·허가증 사본,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- 최근 3년간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적 및 기타 증빙서류 3. 법인의 재산조서 (소정양식) - 법인의 2008년도 결산서 및 기타 증빙서류 4. 법인 자부담 계획 (소정양식) -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세입·세출 예산서(소정양식), 법인부담금 납입확약서(소정양식) ⇒ 수탁운영에 따른 법인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포함 5. 사업운영계획서 (소정양식) 6. 기타 증빙서류 - 팀장 자격증빙서류(이력서, 자기소개서, 경력증명서, 최종학교 졸업증명서, 자격증 사본 등) - 법인대표 이력서 - 기타 수탁 운영에 필요한 자료			

각 서

○ 법 인 명 :

○ 소 재 지 :

○ 성 명(대표자) :

상기 법인은 금번 파주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수탁법인 공모 신청에 있어서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, 만약 허위 사실이 발견 되었을 시 신청의 무효 및 민·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.

또한 위탁운영자 심의결과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수탁 운영자로 선정될 시 파주시와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.

2010년 월 일

위 작성인(법인대표) : (인)

파 주 시 장 귀하

<서식2>

법 인 현 황

1. 법인의 일반사항

가. 법 인 명 :

나. 소 재 지 :

다. 설립목적 :

라. 설립일자 및 연혁(많을 경우 별지 작성)

년 월 일	연 혁

마. 설립근거 및 목적(정관내용)

바.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회복지사업의 관련성

관련조항	내 용	비 고

2. 관련 사회복지사업 운영실적

가.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

연 번	시설명	소 재 지	위탁운영 기 간	법인지원금 (연간)	운영사업의 종 류	종사원 수	비고

나. 사회복지관련 공모사업 선정 실적

(2006. 1. 1 ~ 2008. 12. 31)

연 번	연 월 일	내 용	시행기관	금 액	비고
				천 원	
				천 원	
				천 원	
				천 원	
				천 원	
				천 원	

다. 법인의 지역사회 활동 및 사회복지 기여도

(2006. 1. 1 ~ 2008. 12. 31)

사업명	사업기간	사업지역	사업내용	비 고

라. 주요사업내용

마. 기 타

<서식3>

법인의 재산 조서

1. 법인 재정 실태

가. 총 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합 계 (A+B-C)	순 자 산			부채(C)	비 고
		계	부동산(A)	동산(B)		
합 계						
목적사업용 기본재산						
수 익 용 기본재산						
기타재산 (보통재산)						

나. 재산 성질별 현황

① 목적사업용 기본재산

- 토지 소유 현황

연번	소 재 지	지목	면적(㎡)	소유자 (등기부상)	공시지가 /㎡	총가액 (천원)	비고 (용도)
계							

※ 비고란에는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첨부

- 건물 소유 현황

연번	소 재 지	지목	면적(㎡)	소유자 (등기부상)	공시지가 /㎡	총가액 (천원)	비고 (용도)
계							

※ 비고란에는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첨부

② 수익용 기본재산(임대계약서 사본 등 관계증빙 서류 첨부)

－ 토지 소유 현황

연번	소 재 지	지목	면적(㎡)	소유자 (등기부상)	공시지가 /㎡	총가액 (천원)	비고 (용도)
계							

※ 비고란에는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첨부

－ 건물 소유 현황

연번	소 재 지	지목	면적(㎡)	소유자 (등기부상)	공시지가 /㎡	총가액 (천원)	비고 (용도)
계							

※ 비고란에는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첨부

－ 동산현황 : 예금잔액증명서, 유가증권사본, 6개월간 입출금 내역서 등 공공증서로 첨부

동 산 형 태	금 액 (천원)	비 고
계		

③ 기타재산(보통재산)

－
－
－

④ 부채현황

종 목	내 용	금 액(천원)	비 고
계			

천원

수 입 내 역	금액 (천원)	비 고
계		
수 익 사 업		
재 산 수 입		
후원금 수입		
기 타		

3. 2008년도 결산서 : 별도 첨부

<서식4>

법인 자부담 계획

1. 2010년도 자부담 계획

이사회결의일시	자부담 약정액(천원)	자부담 시기	비 고

※ 자부담 시기 : 위탁운영 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담

2. 【 】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에 따른 자부담 계획

년도별	자부담 약정액 (천원)	예산편성액 및 소요예산 (천원)	예산편성시 자부담비율 (%)	비고
년 평균				
2010년				
2011년				
2012년				

※ 위탁기간 : 2010. 3. 1 ~ 2012. 2. 29(2년간)

<서식4-1>

【 】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세입·세출 예산서

1. 세입예산

(단위 : 천원)

과 목			예 산 액	산 출 근 거
관	항	목		

나. 세출예산

(단위 : 천원)

과 목			예 산 액	산 출 근 거
관	항	목		

※ 세입·세출예산서에는 위탁법인의 법인 부담액 등이 명시되어야 함

법인부담금 납입확약서

과주시 「무한돌봄네트워크팀」를 위탁 운영함에 있어 운영에 따른
소요 예산 중 매년_____원씩 2년간_____원을
본인(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)이 부담할 것을 확약하며 매년
사업 계획 승인 이전에 과주시가 지정한 금고에 납부하겠습니다.

2010년 월 일

위탁 운영자) 소 재 지 :

법 인 명 :

대 표 자 : (인)

붙 임 : 이사회 결의회의록 사본 1부.

과 주 시 장 귀하

<서식5>

사 업 운 영 계 획 서

1. 사 업 명

2. 사업목표 및 운영방침

3. 조직 및 인원 구성 계획

4. 사업추진계획

- 후원자 발굴 및 관리 계획
- 자원봉사자 참여유도 및 활용방안
- 지역자원 인프라 확충 계획
- 기타 세부 사업추진계획

5. 기대효과

※ 자유로운 서식에 의거 위 내용이 충분히 설명 되도록 작성

불법 주·정차단속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
『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』 규정에 의거 불법 주·정차단속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뜻 및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『행정절차법 제46조』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2010년 1월 26일

파 주 시 장

1. 불법 주·정차 단속용 CCTV 설치 이유

○ 파주시의 역점추진 사업인 “깨끗한 파주만들기(4無운동)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시민안전 및 보행권을 확보함으로서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불법 주·정차 단속용 CCTV 설치 장소

읍면동	설 치 장 소	비 고
금촌2동	• 금촌동 978-13	5대

나. 단속대상 행위

도로교통법 제 32조, 제33조,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·정차한 경우

○ 정차 또는 주차의 금지 (법 제32조)

－ 교차로, 횡단보도,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

-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
-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
-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
-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
-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

○ 주차금지의 장소 (법 제33조)

- 터널 안 및 다리 위
-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
-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
 - 소방용 기계, 기구가 설치된 곳
 - 소방용 방화물통
 -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
 -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
-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

○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(법 제34조)

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·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.

3. 단속범위 및 시간

가. 단속범위 : 설치지점으로부터 반경 70m 이내 (360도 회전 가능)

나. 단속시간 :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

4. 불법 주·정차단속 적발자에 대한 처분

가. 근 거 : 도로교통법 제32조 부터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

나. 과태료 : 도로교통법 제160조,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

○ 승용차, 4톤이하 화물자동차 : 40,000원

○ 승합차, 4톤 초과 화물자동차, 건설기계, 특수자동차 : 50,000원

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09년 2월 21일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·우편·인터넷 (<http://www.paju.go.kr>)

다. 기재내용 : 주소·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
·주민등록번호·연락전화번호·의견

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장 (도시미관과)

○ 주 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 (아동동 215)

○ 전 화 : 031)940-5961 (FAX 940-4785)